지평지성 건설부동산 Newsletter
| 2012년 3월 제20호 |

(최신 법령)

1.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3호 2012. 3. 8.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수 건설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그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원 수가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조합은 제한경쟁입찰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것으로만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

다.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하는 업체를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하고,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제2항).

라. 조합은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시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1항).

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시 서면의결권을 인정하되,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

3. 다운로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일부개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코스모(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캄보디아 | 라오스 | 태국
Copyright 2008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